

##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행정지원 서비스 신청



## 01.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전문가 상담

인증지원대상 :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 및 제품을 조기 발굴하고,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판로 확장을 위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에 대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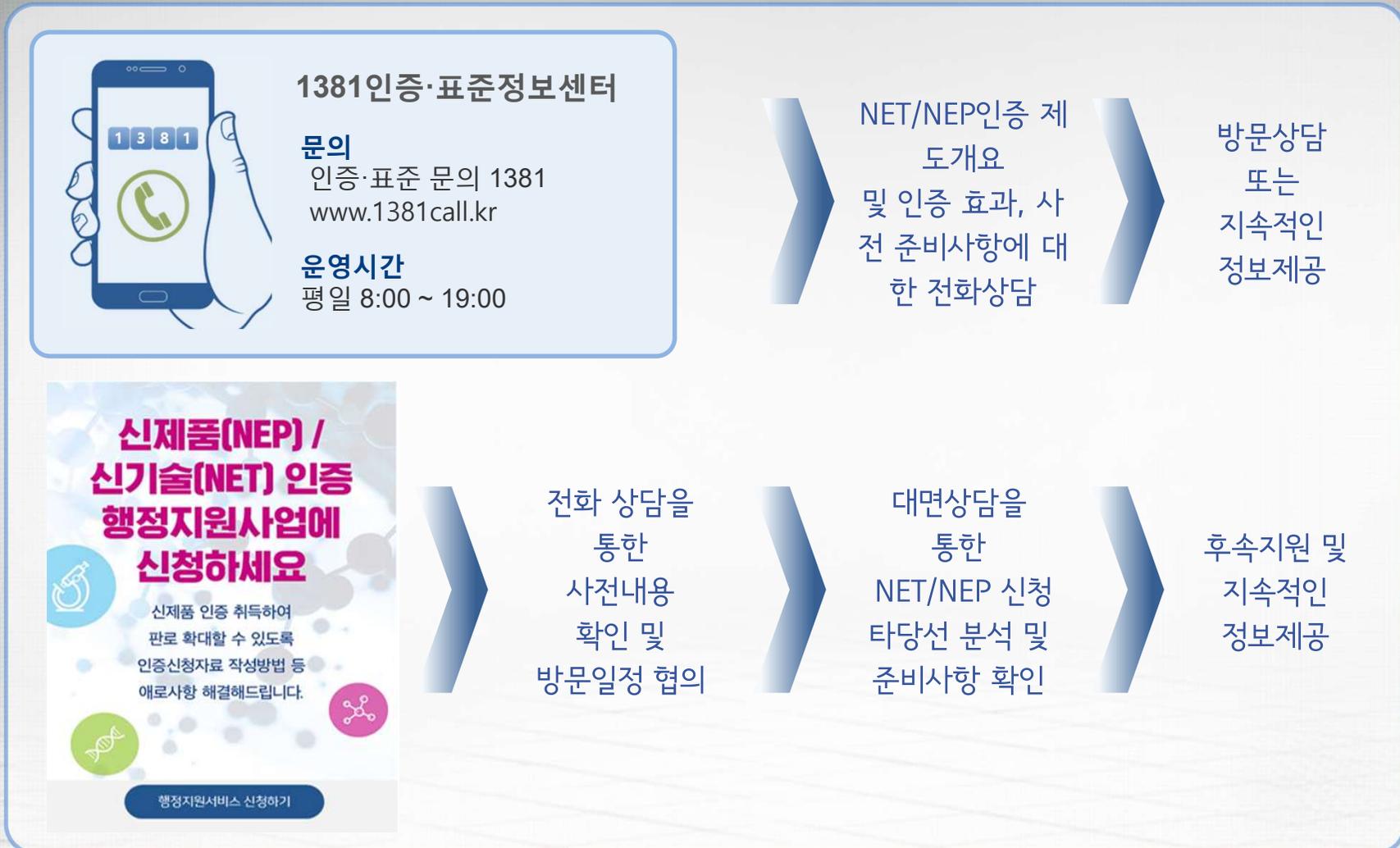
- 신기술(NET)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유도하고자 인증을 함.
- 신제품(NEP)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 NET/NEP인증 행정지원 서비스 범위

- 인증대상여부 사전 확인 및 인증절차 안내 / 상담
- 인증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 준비사항 확인
- 신청서 작성 방법, 구비서류 준비 등에 대한 상담
- 인증신청 관련 서식 및 인증업무 표준매뉴얼 배포

# NET/NEP인증 행정지원 서비스 신청

## 02.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이용방법 (전화상담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한 대면상담)



## 03.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전문가 상담 신청 방법 (www.1381call.kr)

### 신청 메뉴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www.1381call.kr](http://www.1381call.kr)) 초기화면에서 신제품(NEP)/신기술(NET) 인증지원 행정지원사업신청 안내 Pop-Up을 통한 신청 하거나,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www.1381call.kr](http://www.1381call.kr)) 초기화면에서 “NEP/NET헬프데스크” 메뉴를 통해 “행정지원 서비스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04.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전문가 상담 신청 방법 (www.1381call.kr)

###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신청 절차 (1)

#### 행정지원서비스신청

---

<p><b>상담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9조 신제품인증 대상 품목</li> <li>- 인증지원대상/인증지원범위/인증제품지원혜택/관련법령 안내</li> <li>- NEP인증신청 체크리스트 수준의 부족한 부분 확인 및 가이드</li> </ul>	-
<p><b>상담절차</b></p>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신청서 작성 및 신기술성 자료 첨부] --&gt; B[신청서 확인 후 접수]     B --&gt; C[전문가 연계]             </pre> </div>	-
<p><b>행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면책 동의서</b></p> <p>※ 신제품인증지원 행정서비스는 NEP평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적효력(유권해석 등이 있는 결정, 판단이 아니며 중소기업이 신제품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p> <p><input checked="" type="radio"/> 위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행정지원서비스 신청하기</b></p> </div>	-

행정지원서비스의 면책동의

## 05.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전문가 상담 신청 방법 (www.1381call.kr)

###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신청 절차 (2)

#### 행정지원서비스신청

[행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면책 동의서]

신제품인증지원 행정서비스는 NEP 평가기관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법적효력(유권해석 등)이 있는 결정, 판단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연구원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서비스의 면책동의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전문가상담에 대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동의  미동의

## 05.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전문가 상담 신청 방법 (www.1381call.kr)

###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신청 절차 (3)

업체정보 **업체정보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업체명 *	<input type="text"/>	비밀번호 *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업장주소 *	<input type="text"/>
신청인 정보			
성명 *	<input type="text"/>	일반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핸드폰번호(SMS통지)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이메일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선택 -->

## 05.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전문가 상담 신청 방법 (www.1381call.kr)

### NET/NEP인증 행정지원 헬프데스크 신청 절차 (4)

신청정보																												
인증분야 *	-- 선택 --																											
제품명/기술명 *	<input type="text"/>																											
제품/기술의 특징 및 사양	<input type="text"/>																											
신청내용	신제품인증지원 행정서비스는 신제품인증 신청단계에서의 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신제품인증 신청 시 예외 사항에 대한 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담방법	-- 선택 --																											
첨부파일	<table border="0"> <tr> <td>신청제품 설명서</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명세서</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산업재산권(특허등록증 등)</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논문 또는 학술지</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우수발명품 선정 자료</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자료</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r> <td>기타</td> <td><input type="text"/></td> <td>찾아보기...</td> </tr> </table> <p><small>※ 총 9개 중 9개의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당 10 MB, 전체 90MB 크기 이내로 업로드하세요.)</small></p>	신청제품 설명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명세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산업재산권(특허등록증 등)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논문 또는 학술지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우수발명품 선정 자료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자료	<input type="text"/>	찾아보기...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기타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신청제품 설명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명세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산업재산권(특허등록증 등)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논문 또는 학술지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우수발명품 선정 자료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자료	<input type="text"/>	찾아보기...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input type="text"/>	찾아보기...																										
기타	<input type="text"/>	찾아보기...																										

신청 취소

신청

-인증 분야 :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기타분야” 중에서 선택

-제품명/기술명 : 상담을 받고자 하는 제품명/기술명칭을 입력

-제품/기술의 특징 및 사양 :  
상담을 받고자 하는 제품/기술의 특징 및 사양을 기술

-신청내용:  
NEP/NET인증 헬프데스크를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신청방법:  
상담을 받고자 하는 방법을 “전화, 방문, 내원” 중에서 선택

-첨부파일:  
상담 받고자 하는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 확인 후 유선으로 연락을 통해 방문 상담 방법을 협의 합니다.

## 신기술(NET) 인증 제도

### 신기술 (NeT) 인증 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 신기술 인증 절차



### 신기술 지원혜택

- 국가 및 공공구매지원
  - 신기술 적용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 우수조달제품 선정 시 우대(조달청)
- 정부기술개발 사업참여시 가점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연구개발 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혁신형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평가비용 지원)
- 정부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가점부여)

## 신기술(NET) 인증 제도

### 신기술 (NeT) 인증 유효기간

- 최초인증 : 3년, 인증 갱신 : 최대 3년

### 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

주요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신청·접수	2019.12.6(금) ~ 1.7(화)	4.22(수) ~ 5.22(금)	7.14(화) ~ 8.14(금)
1차 심사 (발표심사)	1.28(화) ~ 2.13(목)	6.8(월) ~ 6.24(수)	8.31(월) ~ 9.16(수)
2차 심사 (현장심사)	2.21(금) ~ 3.10(화)	7.3(금) ~ 7.21(화)	9.23(수) ~ 10.15(목)
3차 심사 (종합심사)	3.17(화) ~ 3.20(금)	7.28(화) ~ 7.31(금)	10.20(화) ~ 10.23(금)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3.27(금)	8.7(금)	10.30(금)
이의신청 접수	3.27(금) ~ 4.27(월)	8.7(금) ~ 9.7(월)	10.30(금) ~ 11.30(월)
이의조정심사	4.28(화) ~ 5.8(금)	9.8(화) ~ 9.15(화)	12.1(화) ~ 12.7(월)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5.21(목)	9.22(화)	12.17(목)

## 신기술(NET) 인증 제도

### 신기술(NeT) 인증 대상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전기전자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충전기기
정보통신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시스템 S/W, 정보기술 S/W, 응용 S/W
기계·소재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로봇/자동화 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정밀생산기계,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원자력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화학·생명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건설·환경	대기/폐기물 등, 수질/토양, 건축구조/토목구조, 건축재료/토목재료

## 신기술(NET) 인증 제도

### 신기술 (NeT) 평가방법

구분	위원회	심사방법	심사범위	비고
1차 심사	전문분과 위원회	발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 제품의 경제성기업의 경영성 및 상용화개발자금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li> <li>· 상위 심사 상정 과제 선정과 기술명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li> <li>· 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li> </ul>
2차 심사	전문분과 위원회	현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심사결과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 포함)또는 시험운전장소 등에서 확인하고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 체계 등을 심사</li> <li>* 1차 심사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 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li> <li>· 3차심사 상정과제 선정</li> <li>·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심사결과에 따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개별 통보</li> </ul>
3차 심사	종합심사 위원회	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분야별 3개 위원회로 구성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 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li> <li>- 기계 · 소재분야, 원자력 분야</li> <li>- 화학 · 생명분야, 건설 · 환경 분야</li> </ul> </li> <li>· 1,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및 인증기술선정(선정 · 보류 · 탈락)</li> <li>·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부여</li> <li>· 이의신청, 기간연장,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li> <li>· 기업 기술 설명자 참석면접</li> </ul>

## 신기술(NET) 인증 제도

### 신기술 (NeT)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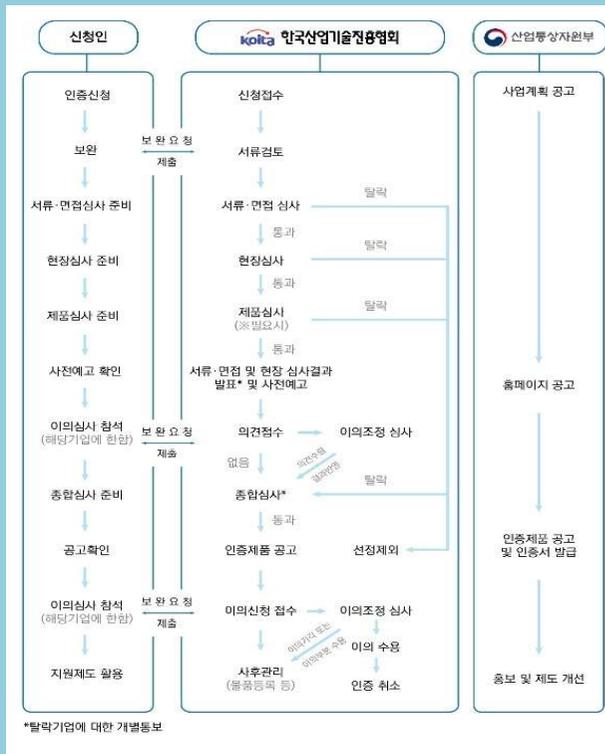
1차심사	2차심사
<p><b>A. 기술성 평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수정도</li> <li>2. 적용성: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li> <li>3. 재현성: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li> <li>4. 발전성: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 발전의 가능성 정도</li> <li>5. 파급성: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가능성 정도</li> </ol> <p><b>B. 경제성 평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제품대비성능: 기존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li> <li>2. 생산·가격 경쟁력: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li> <li>3. 시장규모: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li> </ol> <p><b>C. 경영성 평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li> <li>2.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li> <li>3. 지원효과 :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li> </ol> <p><b>D. 추가 확인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li> <li>2. 시제품의 확인</li> <li>3. 추가확인 필요자료</li> </ol>	<p><b>A. 기술평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li> <li>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li> <li>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li> <li>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li> </ol> <p><b>B. 시제품평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li> <li>2. 부품, 재료등의 국산화 정도</li> <li>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li> </ol> <p><b>C. 품질경영체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li> <li>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li> <li>3. 시험, 검사상태 및 부품, 재료, 완제품 관리상태</li> </ol> <p><b>D. 자금지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용화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3차심사</b></p> <p>·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p>

## 신제품(NEP) 인증 제도

### 신제품(NeP) 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신제품(NeP) 인증 절차



### 신제품(NeP) 지원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신제품(NEP) 인증 제도

### 신제품(NeP) 인증 대상

#### ① 신제품 인증대상(「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9조)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②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제품(NEP) 인증 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제도 안내

#### ■ 시행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 43개기관(17부, 5처, 4위원회, 16청, 1실)

지방자치단체 : 243개기관(광역시/도 17, 자치구 226)

교육자치단체 : 17개기관

정부산하단체 : 149개기관 (90준정부, 30공기업, 29산업통상자원부산하)

#### ■ 의무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산촉법 시행령 제23조)

#### ■ 인증제품 구매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신제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인증신제품 정보관리시스템( [www.buynp.or.kr](http://www.buynp.or.kr) )으로 제공(시행령 제25조)

※ 인증신제품 목록에 추가되는 제품의 경우 [www.buynp.or.kr](http://www.buynp.or.kr), 메인화면 '신제품인증 공고'란에 공시

## 신제품(NEP) 인증 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제도 안내

#### ■ 인증제품 구매면제요청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 의무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 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음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사유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인증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공공구매책임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의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시행령 제27조)

#### ■ 의무구매 실적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시행령 제28조)

## 신제품(NEP) 인증 제도

### 신제품(NeP) 신청기간

주요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신청·접수		'19.11.18 ~ '19.12.18	3.27(금) ~ 4.27(월)	6.26(금) ~ 7.27(월)
심사	서류·면접심사	1.6(월) ~ 1.22(수)	5.13(수) ~ 6.1(월)	8.12(수) ~ 8.28(금)
	현장심사*	2.3(월) ~ 2.19(수)	6.11(목) ~ 6.29(월)	9.9(수) ~ 9.25(금)
사전예고		2.27(목) ~ 3.27(금)	7.7(화) ~ 8.7(금)	10.8(목) ~ 11.9(월)
심사	이의조정심사	4.6(월) ~ 4.17(금)	8.14(금) ~ 8.20(목)	11.13(금) ~ 11.19(목)
	종합심사	4.21(화) ~ 4.24(금)	9.1(화) ~ 9.3(목)	11.24(화) ~ 11.27(금)
신제품 인증 공고		5.21(목)	9.22(화)	12.17(목)
인증서 수여식		5.21(목)	9.22(화)	12.17(목)

- 신청부터 인증 여부 결정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됨.
-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 성적서 및 보고서 준비 등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전체적인 인증 기간은 12개월 이상 생각 해야 함.

## 신제품(NEP) 인증 제도

### 신제품(NeP) 심사기준

- 평가 항목 : 기술성, 경제성, 제품수준, 품질유지능력, 기술개발 역량

#### 서류 면접심사

#####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 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 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 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 B.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 제품에 대한 성능, 품질의 우수성
2. 시장수요의 충족 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 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 C. 기타 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인증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 정도
5. 유사 품목에 인증 여부 및 재신청 가능 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 현장(제품) 심사

##### A. 제품평가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B. 품질경영체계

1.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 검사상태 및 부품, 재료, 완제품 관리상태

##### C. 기타 사항

1. 서류심사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